

의안번호	2211917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5. 8. 4.
추계번호	25F416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어업분야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6.2억원, 2028년 23.5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4.5억원(연평균 24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3년간 -73.3억원(연평균 -24.4억원)
 -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3년간 -1.2억원(연평균 -0.4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73.3	-24.4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1.2	-0.4
합 계	-26.2	-24.8	-23.5	-74.5	-24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 어업권·양식업권 출원 취득의 취득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)	○	
2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 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9조제2항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 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원
 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원
- (안 제9조제3항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감면(안 제9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30.8억 원에서 2023년 21.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 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원
 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－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원

[표 2]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30.8	29.5	27.0	27.4	21.7
재산세	7.1	8.4	8.3	7.9	8.2
지역자원시설세	1.0	1.2	1.2	1.1	1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5.8억원, 2028년 23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3.3억원(연평균 2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 기한 연장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73.3	-24.4
－ 취득세	-16.7	-15.3	-14.0	-46.0	-15.3
－ 재산세	-8.0	-8.0	-8.0	-24.0	-8.0
－ 지역자원시설세	-1.1	-1.1	-1.1	-3.3	-1.1

나. 어업권·양식업권 등 출원취득의 취득세 등 면제(안 제9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한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와 어업권·양식업권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 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[표 4]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0	0	0.2	0.6	0.2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0.4억원, 2028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.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1.2	-0.4
－ 취득세	-0.3	-0.3	-0.3	-0.9	-0.3
－ 등록면허세	-0.1	-0.1	-0.1	-0.3	-0.1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